

보험금 청구 주의 사항

1. 화물 인수 후 14 일 이내에 모든 화물에 대한 상태를 확인 후 해당 운송 업체로 서면 (이메일, 팩스) 사고 통보를 진행 하셔야 하며 , 인수 후 14 일 이내에 통보되지 않은 사고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운송 중 발생한 사고임을 직접 증빙 하셔야 합니다.
2. 사고 사실 관련 증빙(파손 사진 등)은 화주 분께서 직접 운송 회사 측으로 송부 하셔야 합니다.
3.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이 기재된 품목 및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며, 보험가액이 표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.
4. 전자제품 , 가구 등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견적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, 실제 수리비 혹은 예상되는 수리 비를 보상합니다.
5. 해당 박스가 분실 되거나 제품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 있을 경우 파손 제품의 가치 평가 후 해당 박스에 책정된 보험가액 전액 보상 가능하나 , 일부 파손의 경우 파손된 부위의 손해 율을 책정하여 보상합니다.
6. 세트(Set) 화물 중 일부 화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세트 화물 전체 보상이 아닌 해당 파손 품에 대한 손해만 보상 가능합니다.
7. 외상이 없는 전자제품의 작동 불량에 대해서는 필히 A/S 소견서를 유첨 하셔야 합니다.
8. 보험금지급심사 , 보험사고조사 ,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해 [개인(신용)정보 수집 , 이용 , 조회 , 제공에 관한 안내문]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.
8. 보험금지급심사 , 보험사고조사 ,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해 [개인(신용)정보 수집 , 이용 , 조회 , 제공에 관한 안내문]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.
9.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외 타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피보험자성명 :

- 보험금 수령인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